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7. 3. 21 (수) 16:30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박종갑 의원외 10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3. 제안 이유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006년 12월 29일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및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통합되었기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단통합에 따라 지역특화센터의 사업추진 근거인 「산업발전법」 추가(안 제1조).
- 재단통합에 따른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
- 1. 산학연관 등 공동연구 개발 사업 →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2.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 → 지역 전략산업 발전 계획 수립 및 평가
3.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 →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육성·지원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 → 전자정보부품 육성·지원
5.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 → 실버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6. 시험생산사업 → 전통의약산업 육성·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위임·위탁 사업

5. 검토의견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2004년 6월11일 조례 제2806호 제정되어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5년 12월 29일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세부 실행방안에 따라 2006년 12월 29일자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및 충청북도정보통신진흥재단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통합되었기에 재단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조의 관련법령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단법인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와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로 통합하는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후 집행부에서 시행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발췌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는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발전법

제8조(지역진흥산업의 시행)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